

본 조례안은 2020년 05월 01일 전수일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05월 0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 목적 및 정의 (안 제1[~]2조)
- 나.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자 자격 (안 제3~4조)
- 다. 대상자 선정절차, 신청공고에 대해 군수의 위임사항으로 규정 (안 제5조)
- 라.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(안 제6~7조)

3. 검토의견

- O 본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취지가 있습니다.
- O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대상자 자격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절차를 군수의 위임사항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조례안 주요내용인 사업신청과정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업자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, 사업자 교육·컨설팅사업, 안전·서비스관련 환경개선사업 3가지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, 군수가 정하는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보조받는 것이며,

- O 입법례로는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있고(고성군, 속초시, 양구군, 원주시, 화천군, 횡성군) 이 중 원주시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.
- 조례안은 농촌민박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농촌 관광활성화 도모취지와 함께, 안전·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지원으로 민박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,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농어촌정비법」